

# 변경내용

## 1. 대상 투자신탁 :

집합투자기구 명칭(종류명 명칭)	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
대신 배당주 증권 자투자신탁 제1호[주식]	61295
수수료선취-오프라인(A)	61629
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(C)	61293
수수료미징구-온라인(Ce)	75787

## 2. 주요변경내용

### ① 규약

-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(2020.4.1. 시행)

### ② 투자설명서

- 법시행령 제 130 조 제 2 항에 의거 최근 결산기의 재무제표 확정으로 인한 정정
- 결산으로 인한 수익률 변동성 변경(10.92%->17.37%) 및 투자위험등급변경(3 등급->2 등급)
- 해외증권의 평가기준시점 변경사항 반영

### ③ 간이투자설명서

- 법시행령 제 130 조 제 2 항에 의거 최근 결산기의 재무제표 확정으로 인한 정정
- 결산에 따른 투자위험등급변경(3 등급->2 등급)

## 3. 변경 대상 서류 : 규약, 투자설명서, 간이투자설명서

## 4. 변경시행일 : 2020.11.06.

## [집합투자규약 변경대비표]

항 목	변 경 전	변 경 후
제 44 조(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)	<p>①~③ &lt;생략&gt;</p> <p>④~⑥ &lt;신설&gt;</p>	<p>①~③ &lt;현행과 같음&gt;</p> <p>④ <u>다음 각 호 외의 사유로 제 1 항에 따라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 수익자는 제 39 조와는 별도로 제 5 항에 따른 투자신탁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.</u></p> <p>1. <u>집합투자업자, 신탁업자가 법령·신탁계약·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</u></p> <p>2. <u>집합투자업자, 신탁업자가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</u></p> <p>⑤ <u>제 4 항에 따른 투자신탁 보수는 다음 각 호에 의하며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</u></p> <p>1. <u>대상금액: 제 39 조에 따른 해당 투자신탁 보수율에 변경시행일 전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에 제 2 호의 대상기간 일수를 곱한 금액과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 설정과 관련하여 지급한 비용(법률자문료 등)</u></p> <p>2. <u>대상기간: 변경시행일로부터 6 개월간. 단, 신탁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변경 시행일로부터 신탁계약기간 종료일까지로 한다.</u></p> <p>⑥ <u>집합투자업자, 신탁업자는 제 5 항 적용과는 별도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수익자를 상대로(제 37 조 제 4 항에 따른 신탁업자가 수익자총회를 요청하는 경우는 수익자 및 신탁업자로 한다)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</u></p>
부 칙	<신설>	제1조(시행일) 이 신탁계약은 2020년 11월 6일부터 시행한다.

## [투자설명서 변경대비표]

항 목	정정사유	정정전	정정후
요약정보			
투자위험등급	결산에 따른 투자 위험등급변경	<u>3등급(다소 높은 위험)</u>	<u>2등급(높은위험)</u>
- 투자비용 - 투자실적추이(연평균 수익률, 단위:%) - 운용전문인력	업데이트	-	결산 및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
제 2 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		
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	업데이트	-	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
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유형	결산으로 인한 투자위험등급 및 수익률변동성변경	이 투자신탁은 --<중략>--집합투자 기구입니다. 설정된 후 3년이 경과 하여 실제수익률 변동성을 기준으로 위험등급을 구분한 결과 <b>연환산 표준편차는 10.92%이며 이에 따라 투자위험 6등급 중 3등급에 해당되는 다소 높은 위험</b>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. 따라서 수익자는 --<중략>-- 원하는 투자 자에게 적합합니다.	이 투자신탁은 --<중략>--집합투자 기구입니다. 설정된 후 3년이 경과하여 실제수익률 변동성을 기준으로 위험등급을 구분한 결과 <b>연환산 표준편차는 17.37%이며 이에 따라 투자위험 6등급 중 2 등급에 해당되는 높은 위험</b>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. 따라서 수익자는 --<중략>-- 원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.
12.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	해외증권의 평가 기준시점 변경	나.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- 모투자신탁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,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은 그 종류별로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. ① 상장주식 :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( <b>단서신설</b> ) ③ 장내파생상품 : 그 파생상품이 거래되는 증권시장 등이 발표하는 가격( <b>단서신설</b> )	나.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- 모투자신탁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,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은 그 종류별로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. ① 상장주식 :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( <b>해외 증권외의 경우 전날의 최종시가</b> ) ③ 장내파생상품 : 그 파생상품이 거래되는 증권시장 등이 발표하는 가격( <b>해외 파생상품외의 경우 전날의 가격</b> )
13.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	업데이트	-	결산으로 인한 업데이트

항 목	정정사유	정정전	정정후
제3부. 1. 재무정보 2.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3.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	업데이트	-	결산 및 기준일 변경으로 인 한 업데이트
제4부. 1.집합투자업자에 관 한 사항 다. 최근2개 사업연 도 요약 재무내용 라. 운용자산 규모	업데이트	-	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
제5부 4. 이해관계인 등과 의 거래에 관한 사항	업데이트	-	결산으로 인한 업데이트

## [간이투자설명서 변경대비표]

항 목	정정사유	정정전	정정후
투자위험등급	결산에 따른 투자위험등급변경	<u>3등급(다소 높은 위험)</u>	<u>2등급(높은위험)</u>
- 투자비용 - 투자실적추이(연평균 수익률, 단위:%) - 운용전문인력	업데이트	-	결산 및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